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 년 월 일

청 원 인

성 명 : 양 현 준 외 26명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21 209동 1303호

전화번호 : 031-708-4994 (휴대전화 : 010-9071-7288)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21 209동 1303호
	성명 : 양현준 외 26명
건명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2년 월 일

소개의견

청원인 양현준은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소속 복지상임위원회 청소년의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두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1.2명입니다. 이 적은 출산율의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사회로 진출한 여성들에게 있어서 ‘출산’이 그들의 일자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대한민국에는 산전후휴가 급여에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2001년의 법률 개정 이후 10년이 더 지난 2012년의 현 실정과는 맞지 않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복지상임위원회에서는 여성들의 노동자이자 산모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나아가 사회적 효용을 높여 고질적인 저출산문제 해결에 일조하고자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청원합니다.

청소년의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전후 보호휴가’에 관한 법령인 ‘고용보험법 제75조의3’의 신설 및 ‘고용보험법 제76조 2항’의 개정

신구문대조표 1 : ‘고용보험법 제75조의3’의 신설

현행	개정문
(참조) 제75조(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후략> 제75조의2(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생략.	<신설> 제75조의3(계약만료 시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계약이 만료된 경우 남은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구문대조표 2 : ‘고용보험법 제76조 2항’의 개정

현행	개정문
<p>②제1항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p> <p>(참조) 2001년 대통령령에서 상한액은 90일 기준 405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제 적용.</p>	<p>②제1항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u>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상한액: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금액의 2배, 다태아의 경우 2.5배를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u></p> <p>2. <u>하한액 :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u></p>

청원서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2001년과 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여성의 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증가로 산전후휴가 등 중 계약이 만료되어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중 계약 만료 시에도 안정된 육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90일간 산전후휴가등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2001년 당시 제정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에 대한 대통령령은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의 현실과는 맞지 않으며, 임금 수준과 물가 수준 등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 따라서 매년 현실을 반영하여 정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비율을 통해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상한액을 법률로 정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여성의 출산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산모의 복지 보장 등을 추구한다.

2. 주요골자

고용보험법 제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3(계약만료 시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계약이 만료된 경우 남은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한다.

신구문대조표

현행	개정문
(참조) 제75조(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후략> 제75조의2(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생략.	<신설> 제75조의3(계약만료 시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계약이 만료된 경우 남은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76조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지급 기간 등) ②제1항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금액의 2배, 다태아의 경우 2.5배를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2. 하한액 :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신구문대조표

현행	개정문
<p>②제1항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p> <p>(참조) 2001년 대통령령에서 상한액은 90일 기준 405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제 적용.</p>	<p>②제1항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u>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상한액: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금액의 2배, 다태아의 경우 2.5배를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p> <p>2. 하한액 :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p>

청원인 성명 : 양현준 외 26명

청원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21 209동 1303호

청원인 전화번호 : 031-708-4994